

- 지역사회 발전 및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한 -

## 공간기부협약서

“안성시시설관리공단” (이하 ‘공단’이라 한다)는 “사단법인 다사랑공동체” (이하 ‘다사랑’이라 한다)에게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공간을 공익광고 장소로 제공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 [목적]

본 협약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과 개방형 화장실의 공간을 다사랑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기부문화의 확산과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통한 배려의 문화정착을 목적으로 하며,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### 제2조 [기본 원칙]

협약 기관은 본 협약 내용을 이행하는데 있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호·호혜의 원칙을 준수한다.

### 제3조 [협약의 내용]

협약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하며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1. 공단은 다사랑에게 공간 제공에 있어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아니한다.
2. 다사랑은 제공된 공간을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공단과 협의 후 시안을 기재한다.
3. 다사랑은 모금된 후원금을 전액 목적에 맞도록 집행한다.
4. 다사랑은 부착물의 정기 점검을 통하여 훼손된 부착물을 지원하고 공간 나눔 장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5. 다사랑은 공단에서 추천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다사랑은 반영하여 광고 시안을 작성해 부착물에 기재할 수 있다.
6. 본 협약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다사랑은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제4조 [신의성실]

협약 기관은 본 협약의 취지를 이해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, 협약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.

제5조 [개인정보보호]

협약 기관은 상호 제공된 대상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, 제3자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6조 [협약 효력 등]

이 협약은 협약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서면으로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.

제7조 [손해배상]

다사랑은 광고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공단의 명예와 금전적 손해를 입힐 경우 다사랑은 모든 책임을 지며, 이로 인한 어떠한 사유로도 공단에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제8조 [기타사항]

협약 기관은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,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분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이상과 같이 양 기관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 협약서는 각각 작성하여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5월 10일



안성시시설관리공단

이사장 최갑선

최갑선



사단법인 다사랑공동체  
Multicultural Communities Association

회장 성재호

조창문 代